

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[별표 1의3] <개정 2025. 10. 1.>

사업장 분류기준(제13조 관련)

| 종 별   |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종사업장 |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      |
| 2종사업장 |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|
| 3종사업장 |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|
| 4종사업장 |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|
| 5종사업장 |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       |

비고: "대기오염물질발생량"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,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.